고덕신도시 아테라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ARTERA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04월 17일]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고덕신도시 아테라에서는 분양상담전화(1833-6301)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외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4이며, 공고문은 고덕신도시 아테라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m²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접수: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신생아)	접수: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4.17.(금)	'26.04.27.(월)	'26.04.28.(화)	'26.04.29.(수)	'26.05.07.(목)	'26.05.14.(목)~'26.05.23.(토) (10:00~17:00)	'26.06.28.(일)~'26.07.01.(수) (10: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방문접수	
장 소	▪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비 고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해당 일시 외에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63BL)**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1층~ 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5m² 이하 630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160세대, 특별공급 470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6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9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125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3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6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2.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공급면적 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소계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계)	세대별 대지지분(m²)	발코니 확장여부	발코니 면적(m²)	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시기(변동가능)
합 계													630	63	63	94	32	125	30	63	470	160	26	
2026000124	01	074.5900A	74A	74.5900	26.9495	101.5395	7.1048	33.7901	142.4344	65.1864	확장	35.0600	180	14	18	27	9	36	9	21	134	46	8	'28.10
	02	074.7200B	74B	74.7200	26.9964	101.7164	7.1172	33.8490	142.6826	65.3000	확장	38.4000	134	11	13	20	7	27	6	10	94	40	6	
	03	084.5600A	84A	84.5600	30.5516	115.1116	8.0545	38.3066	161.4727	73.8995	확장	38.1700	156	19	16	23	8	31	7	11	115	41	6	
	04	084.5600B	84B	84.5600	30.5516	115.1116	8.0545	38.3066	161.4727	73.8995	확장	36.6400	157	19	16	24	8	31	8	21	127	30	6	
	05	084.9400C	84C	84.9400	30.6889	115.6289	8.0906	38.4788	162.1983	74.2315	확장	39.8900	3	-	-	-	-	-	-	-	-	3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m², 세대, 원)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층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1차(10%) 2026.11.19.	중도금 2차(10%) 2027.02.16.	중도금 3차(10%) 2027.06.16.	중도금 4차(10%) 2027.10.14.	중도금 5차(10%) 2028.02.11.	중도금 6차(10%) 2028.06.10.	잔금 입주 시(주택도시기금 제외) 입주지정일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입주지정일
074.5900A	74A	180	1층	2	446,980,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59,094,000	75,000,000
			2층	7	451,740,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60,522,000	75,000,000
			3층	8	461,250,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63,375,000	75,000,000
			4층	8	470,760,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66,228,000	75,000,000
			5층 이상	155	475,520,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67,656,000	75,000,000
074.7200B	74B	134	1층	4	447,760,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59,328,000	75,000,000
			2층	5	452,530,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60,759,000	75,000,000
			3층	6	462,050,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63,615,000	75,000,000
			4층	6	471,580,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66,474,000	75,000,000
			5층 이상	113	476,350,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67,905,000	75,000,000
084.5600A	84A	156	1층	5	506,730,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77,019,000	75,000,000
			2층	5	512,120,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78,636,000	75,000,000
			3층	6	522,90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81,870,000	75,000,000
			4층	6	533,680,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85,104,000	75,000,000
			5층 이상	134	539,080,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86,724,000	75,000,000
084.5600B	84B	157	1층	5	506,730,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77,019,000	75,000,000
			2층	6	512,120,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78,636,000	75,000,000
			3층	6	522,90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81,870,000	75,000,000
			4층	6	533,680,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85,104,000	75,000,000
			5층 이상	134	539,080,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86,724,000	75,000,000
084.9400C	84C	3	26층	3	541,50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87,450,000	75,0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신청자격

1. 공통사항

■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제외)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및 임신 관련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평택시청 사회복지과(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4.17.~2026.04.17.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7.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제일감정평가법인
120,113,380	120,990,120	119,236,64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택지비 가산비: 기타비용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초과 조경특화	입면마감 특화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에어컨 냉매배관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기계환기설비	친환경주택 건설 추가비용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인증설계 추가비용	감리비 추가비용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기초지반공사비: 임석지반 공사비	기초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안전관리비	전기차 충전시설
금액	4,851,187	4,736,540	114,648	29,694,821	3,427,856	2,673,248	2,010,026	4,503,736	888,333	1,675,193	2,383,437	697,706	279,268	5,536,454	4,327,945	539,118	186,044	291,300	275,15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설(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전기
상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213-81-54324) /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220-81-0398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752-86-00309) / 주식회사 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595-87-02147)	주식회사 지성설계컨설턴트(105-86-35619)
계약금액	7,149,025,000원	572,661,360원

■ 사업주체 현황

구분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사업자등록번호	135-82-14276	104-81-31309	409-81-31276	106-81-33808	504-81-46827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분양주체는 금호건설(주) 입니다.

■ 시공사

구분	시공사			
상호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사업자등록번호	104-81-31309	409-81-31276	106-81-33808	504-81-46827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고덕 119안전센터 맞은편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버스노선 : 일반 1452번 버스(고덕아너스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운영기간 : 견본주택 오픈일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등 일부기간 일반고객 관람 제한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26.04.24.(금)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10:00~17:00**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홈페이지 (PC·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https://www.arteragd.co.kr**	■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1833-6301 (10:00 ~ 17:00)**